- 7. 소비자의 안전 (§45 §52)
- (1) 소비자안전조치의 개관
-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안전성확보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'소비자의 안전'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.
- 1) 취약계층에 대한 대한 국가의 보호대책 마련 요구 및 사업자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 (§45)
 - 2)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권(§46)
 - 사업자의 물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
 - (2) 결함정보의 보고의무
 - 1) 사업자의 보고의무
- 제공한 물품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5일(중대한 결함의 경우 즉시)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.
 - 결함의 범위 : 사망, 3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(골절, 질식, 화상 등), 2명이상의 식중독,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.
 - 사업자의 범위(제3항) : 제조 · 수입 또는 제공자 및 백화점 등 대형마트.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가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(령 §35 ①)
 - 중앙행정기관정의 결함내용에 대한 조사 의뢰 및 필요한 조치의무(§47 ②)
 - 2) 자발적 리콜(§48)
- 리콜(Recall)제도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, 사업자가 당해 제품이나 용역을 결함을 시정해주는 제도.
-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 · 파기 · 수리 · 교환 · 환급 또는 제조 · 수입 · 판매 · 제공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사업자는 결함정보와 위해정보 및 시정조치의 방법 등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, 시정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(령 §36).

- 3) 자발적 리콜의 권고(§49)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당해 물품의 수거 · 파기 · 수리 · 교환 · 환급 또는 제조 · 수입 · 판매 · 제공의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(제1항).
-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이 이내에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(제2항). 권고를 수락한 사업자는 자발적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(제3항)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(제4항). 다만 사업자가 물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할 수 없다.

4) 리콜명령과 긴급리콜명령(§50)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청문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(시정조치 통보 -> 7일 이내 시정계획서 제출 등)에 따라 당해 물품의 당해 물품의 수거 · 파기 · 수리 · 교환 · 환급 또는 제조 · 수입 · 판매 ·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.
-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, 또한 긴급리콜명령을 내릴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(§82 단서).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 파기 및 용역의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(동조 제2항).
- cf) 현재 자동차관리법, 식품위생법 등에 리콜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, 자발적 리콜이 압도적으로 많음.
- 0 사업자 입장에서 리콜은 기업이미지 실추와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리콜보다 항의하는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 시정을 선호함(예, 2000년 미쓰비시 자동차 결함 은폐사건).
 - -> 리콜정보의 제공 및 통합 관리 요구(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도 있음)
- 0 결함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(제조물책임법)이 클수록 리콜제도는 확대(2002년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리콜 확대 예, LG전자 압력솥 폭발사건 등)

(3) 위해정보의 수집

- 1)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(§51)
-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둔다.
- 소장 1인을 두며,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2) 위해정보의 수집과 처리(§52)
-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- 위해정보의 분석 후 원장은 필요하면 각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(제2항) : 소비자 안 전경보의 발령, 안정성에 대한 사실의 공표
 - 위해정보를 수집 · 처리하는 자의 정보누설 금지 의무(제3항)
 -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 : 행정기관, 병원, 학교, 소비자단체 등(제4항)